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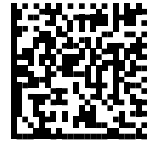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 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에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 N. C. Gen. Stat. § 96-14( )에의거하여일,원고가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이름)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14.( )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실격이 (아니)라는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 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일부터원고는로서고용주를위해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법의규정:

고용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해 실업상태가 된 것으로 본부가 판단한 개인은 혜택에 실격처리된다. 실격기간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개인이 클레임을 제출한 첫 주의 첫날부터 시작된다.

(b)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다음 중 하나이다:

- (1) 고용주가 직원에게 기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직원에게 설명한 행동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고용주의 이익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무자비한 무시의 행위
- (2) 고용주의 이익이나 고용인의 의무 또는 고용주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실질적인 무시를 나타내기 위한 수준의 또는 재발하는 부주의 또는 과실의 행위

(c) 다음의 예는 개인이 혜택을 위한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반박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된 증거이다:

- (1) 고용주의 서면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 정책 위반.
- (2)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로 인해 심각한 장애가 있는 보고.
- (3) 고용주 구내에서의 음주 또는 불법 약물 사용.
- (4) 고용주를 위한 근로자의 근로 또는 합당한 근로 기준 또는 정책을 위반한 경우 G.S. 90-95(a)(1) 또는 G.S. 90-95(a)(2)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규제 물질을 제조, 판매, 또는 배포함에 따른 관할 법원의 유죄 판결.
- (5) 폭력, 성범죄 또는 불법 약물에 관련된 범죄가 사용자의 근로와 관련 또는 연관이 있거나 합당한 업무 규칙 또는 정책을 위반하여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고용이 종료되거나 정지된 경우.
- (6) 상사, 하급자, 동료, 납품업자, 고객, 또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하여 고용주의 근로와 관련된 모든 신체적 폭력.
- (7) 적대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연방 정부 보호 특성과 관련하여 상사, 부하 직원, 동료, 납품업자, 고객 또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또는 행동.
- (8) 고용과 관련된 절도.
- (9) 이전에 제출한 고용 신청서를 포함하여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데이터를 단조 또는 위조.
- (10) 고용주의 서면 근로 정책 위반.
- (11) 근로자 해고 직전 12 개월 동안 합리적으로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용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N.C. Gen. Stat. § 96-14.6.



업무와관련된불법행위에대한정의를사법적으로여러차례해석되었습니다. 예를들  
어다음을참조하십시오, Intercraft Indus. Corp. v. Morrison, 305 N.C. 373, 289 S.E.2d  
357(1982); Lynch v. PPG Indus., 105 N.C.App. 223, 412 S.E.2d 163 (1992)  
[약품관련고용으로부터의퇴직]; Yelverton v. Kemp Furniture Indus., 51 N.C.App. 215, 275  
S.E.2d 553 (1981); In re Cantrell, 44 N.C.App. 718, 263 S.E.2d 1 (1980); In re Collingsworth, 17  
N.C.App. 340, 194 S.E.2d 210  
(1973). 원고가직장에서해고된경우, 고용주는원고의해고가원고의실업보험혜택으로부터  
실격될만한사유로인한것이었다는증거를제시할부담을지게됩니다. Guilford Cty. v.  
Holmes, 102 N.C. App. 103, 401 S.E.2d 135  
(1991). 실업보상혜택의거절의목적을위한“불법행위”의발견은반드시특정근로규정을위반  
한것에달려있는것은아닙니다. Gregory v. Dep't of Revenue, 93 N.C. App. 785, 379 S.E.2d 51  
(1989).

규제물질검사규정법(“CSERA”)은노스캐롤라이나에서규제물질조사를위한절차요  
구사항을규정합니다. 적합한증거를제시함으로써고용주가사례를증명해야하지만, 직원에  
게귀속되는불법행위를설립하기위해그이익에대한손해를나타내는것이요구되지는않습니  
다. Eury v. N.C. Emp't Sec. Comm'n, 115 N.C. App. 590, 446 S.E.2d 383, cert. denied, 338 N.C.  
309, 451 S.E.2d 383 (1994). CSERA 에의거하여, 고용주는다음을수립해야합니다: (1)  
피고용인이규제물질에대해양성을보이고; (2) 약물검사표본의연계보관성; (3)  
규제약물검사의신뢰성; 그리고(4)  
피고용인이고용주의약물검사정책을정확히어떻게위반했는지설명해야합니다. N.C. Gen.  
Stat. 95 §§ 230 부터 235; 13 N.C. Admin. Code 20.0101 부터 20.0602 를참조하십시오.  
규제물질검사의양성결과는고용주가 CSERA 를준수함을보여주는경우, 업무와관련된불법  
행위를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직원이정당한이유없이합리적이고올바르게시행된약물검  
사정책을준수하기를거부하면불법행위가됩니다. Boesche v. Raleigh-Durham Airport Auth.,  
111 N.C. App. 149, 432 S.E.2d 137  
(1993) 를참조하십시오 (검사에복종하기를거부하여유지보수기술자가해고당한것에의거  
하여, 고용주가실시한무작위약물검사정책이불법검색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정비사의  
헌법상의권리를침해하지않았으며, 직원이부당하게고용으로부터해고당하지는않았음);  
DES Precedent Decision No. 21, In re Roecker (1987) 도참조하십시오.

검사를수행한진료소의선서진술서또는증언은약물또는알코올관련고용문제와관련  
된경합된클레임사건에서제시된규제약물검사결과를입증할수있습니다. 진술서또는증언  
은결과가의미하는바를설명해야합니다. 49 C.F.R. Part  
40 에따라, 미연방교통국자동차운반선안전관리국에서, 또는 10 C.F.R. Part  
26 에따라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요구하는시험에관한증거도제출할수있습니다. 규제  
물질검사결과와적용가능한법정또는규제절차요구사항의준수여부는원고가항소심판전청  
문회에서또는진술서를통해진술한경우입증된것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04 N.C. Admin.  
Code 24C .0211; DES Precedent Decision No. 34, In re Teachey (1999) 를참조하십시오.

#### 법의결론:

현재의경우, 위원회는제시된적합하고믿을수있는증거에근거하는사실의발견을통  
해원고가고용에서부터해고되었다고결론내립니다. 위원회는더나아가라고결론내렸습니  
다.

앞에서언급한바에따라, 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수정되어야)합니다. 더나아가, 원고는실업보험혜택을수령하기에(실격이)  
(실격이아니)어야합니다.



결정 :

항소심판의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부터실업보험혜택에대해실격입니다.  
(실격이아니며부터실업보험혜택을받을것입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항소에참여하여이결정에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_\_\_\_\_  
위원장

**주의:**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는 [www.des.nc.gov](http://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항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카운티의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5 페이지 중 5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